

## 1. 개정이유

질병관리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부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       호, 2020. 5. 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소속책임운영기관 중 국립목포병원과 국립재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,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정원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임.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     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     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     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5. 00. ~ 5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##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을 삭제한다.

별표 10 제2호가목1) 표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0년 5월 31일”을 “2021년 5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11 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표 별표 11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0의2]

국립마산병원 · 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

(제38조제2항 관련)

평가대상 정원

| 업무                  | 정원  | 평가기간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|
| 1) 의료서비스 지원(국립마산병원) | 3명  | 2020년 12월 31일까지 |
| 2) 의료서비스 지원(국립목포병원) | 9명  | 2020년 12월 31일까지 |
| 3) 의료서비스 지원(국립재활원)  | 16명 | 2020년 12월 31일까지 |
| 4) 의료서비스 지원(국립마산병원) | 12명 | 2021년 12월 31일까지 |
| 5) 의료서비스 지원(국립목포병원) | 12명 | 2021년 12월 31일까지 |
| 6) 의료서비스 지원(국립재활원)  | 6명  | 2021년 12월 31일까지 |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제39조(한시정원) ①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5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둔다. | 제39조(한시정원) <삭 제> |
| ②·③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·③ (현행과 같음)     |